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0 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 송옥주 · 민병덕 · 이연희

백승아 · 정성호 · 부승찬

한정애 • 문진석 • 이수진

이병진 · 염태영 · 이원택

박 정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 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하여는 「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」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.

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, 격지·오지 등 근무지에는 군무원의 거주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임대자금 지원도 되지 않아 군무원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군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.

이에 격지·오지 등 특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거지 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,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도 록 규정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 을 도모하려는 것임.

한편, 현행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혜택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.

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

주요내용

- 가. 격지·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2항).
- 나. 군무원의 자녀도 보육 및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 11조 및 제11조의2).
- 다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의3).

법률 제 호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제1호 및 제2호"를 "제1항 및 제2항"으로, "군인"을 "군인 및 군 무원(이하 "군인등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② 국가는 격지·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(「군무원인사법」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9조제4항"을 "제9조제5항"으로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군인"을 각각 "군인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군인"을 "군인등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군인"을 각각 "군인등"으로 한다.

제11조의2 중 "군인"을 "군인등의"로 한다.

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3(고궁 등의 이용 지원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

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 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혂 했 개 정 아 제9조(군 숙소 지원 등) ① (생 제9조(군 숙소 지원 등) ① (현행 략) 과 같음) <신 설> ② 국가는 격지・오지 또는 도 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 무원(「군무원인사법」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게 제1항에 해당하는 주거지원 을 제공할 수 있다. 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 ③ -----제1항 및 제2항---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 군인 및 군무원(이하 "군인등" 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 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이라 한다)-----수 있다. <u>③</u>·<u>④</u> (생 략) ④·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) 제9조의2(군 숙소 관리 업무의 제9조의2(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)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위탁) ① -----경우 제9조제4항에 따른 군 숙 ----제9조제5항-----소의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·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・법인

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- 1. ~ 4. (생 략)
- ② (생략)
- 제11조(보육 및 교육 지원) ① 국 자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에 따라 <u>군인</u> 밀집지역에 국공립어 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 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・수익하게 할수 있다.
 - ③ 국방부장관은 <u>군인</u>의 근무 형편상 <u>군인</u>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<u>군인</u>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녀(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)에게 숙식
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보육 및 교육 지원) ① -
<u>군인등</u>
<u>군인등</u>
②
<u>군인등</u>
③
<u>군인등</u>
<u>군인등</u>

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④ (생 략)

제11조의2(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군</u> 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<신 설>

	1. ~ 5. (현행과 같음)
	④ (현행과 같음)
제	11조의2(교육시설에 대한 지원
	등)
	인등의
제	11조의3(고궁 등의 이용 지원)
	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에
	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	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
	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
	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
	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
	여 이요하게 하 수 이다